

심리상담센터 운영 지침

2024.1.1. 제정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경희대학교 채무규정 제28조(미래혁신원)에 규정된 미래혁신단 심리 상담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.)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업무) 센터는 경희대학교 학생이 정서, 성격, 적응, 대인관계, 학업, 진로 등 다양한 영역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해결하여 건강하고 창조적인 대학생활을 영위하며 나아가 성숙한 사회인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 조력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

1. 심리·진로 관련 검사 실시 및 결과해석상담
2. 심리·진로 관련 개인상담
3. 대학생활 및 정신건강 관련 집단상담·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4. 대내·외 상담 관련 네트워크 구축
5. 기타 학생 심리상담에 관련된 제반 사항

제3조(대상) 센터 이용 대상은 경희대학교 학생으로, 학생(휴학생 포함)이라 함은 학부 또는 대학원 재적 중인 사람으로 졸업생 및 교육원 소속생은 해당하지 아니한다.

제4조(개인상담) ① 개인상담은 학생이 상담전문가와 1:1로 진행하며 대면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.
② 개인상담은 1회 50분, 10회를 기본으로 하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.
③ 연장 시 상담 횟수는 내담자 상황, 센터 상담 대기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센터에서 결정한다. 특별한 연장 사유가 없을 시 10회를 마친 뒤 다시 상담을 받고자 할 때는 종결일로부터 6개월 후 재신청할 수 있다.
④ 약속된 일정에 연락 없이 결석(노쇼) 2회 누적 시 종결처리, 당일취소 2회 시 횟수 차감하고 총 8회 진행할 수 있다.
⑤ 상담 확인서는 발급이 가능하되 확인서에 상담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.

제5조(심리검사) ① 학생들의 다각적 자기이해를 돋기 위하여 다양한 심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.
② 심리검사 실시 후 결과지는 검사해석상담 실시 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.
③ 다면적 인성검사(MMPI-2), 기질 및 성격 검사(TCI)는 결과해석상담 후에도 결과지를 제공하지 않는다.

제6조 (비밀유지 및 비밀유지의 한계) ① 센터 이용 학생의 사생활과 비밀이 보호되도록 상담내용은 일체 비밀유지를 하여야 한다.
② 내담자의 생명이나 타인 및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, 내담자의 동의 없이도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관련 전문인이나 가족, 관련기관 등에 알릴 수 있다.

제7조 (센터 이용 제한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 이용이 제한된다.

1. 센터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
2. 센터 내 고성, 폭언, 욕설, 위협 및 소란을 일으키는 경우
3. 학교 및 센터의 안전 및 질서유지에 반하는 경우
4. 자해, 자살의 위험도가 심각한 수준이어서 의학적 처치가 우선되거나 타인에게 해를 끼

칠 우려가 있는 경우

5. 개인상담 전 자살예방서약서에 서약하지 않는 경우

제8조(기타) 이 밖에 캠퍼스별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캠퍼스 센터가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